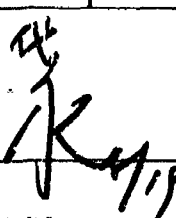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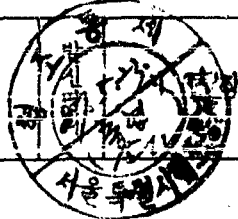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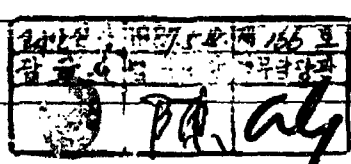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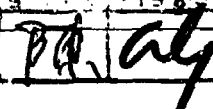


시... 조... 장

# 기안용지

(전화: 731-6346)

과장  
 지행상  
 특별취급

분류기호 문서번호	시설30312-236	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시 장	
수시처 보존기간	영구		
시행일자	87.5.		
보조 기 관	도시계획국장 전 결	협조 기 관	법무담당관 심사필 업로통계관 행정과장
	시설계획국장		
	시설계획1계장		
기안책임자	이상진(이영우)		문서통제 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 	발송인
제목	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결정		
(제1안) : 내부결재			
1. 도정 30315-561호('87.3.6)와 관련입니다.			
2. 위호로 도봉구청장으로 부터 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결정 요청한 사항이			
우러시 '87년도 제2차 도시계획 위원회('87.5.7)에 상정, 심의 가결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			
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안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 시행하고자 합니다.			
첨부 : 관계서류 1전. 끝.			
(제2안) : 고시안			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			
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결정			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및 같은법 시행령

제6조 제1항에 의거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
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및

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7. 5. 20

서울특별시

○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의치	면적(㎡)	비고
기정	시장	도봉구 수유동 55-1 외2필지	2,712.7	
변경	"	"	0	폐지

○ 변경결정도면 :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및 도봉구청 비치도면과 같음. 끝.

(계3안)

수신 : 건설부장관 (도시시설계획과장)

제목 : 같음.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보고 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및 도면 각1부. 끝.

(계4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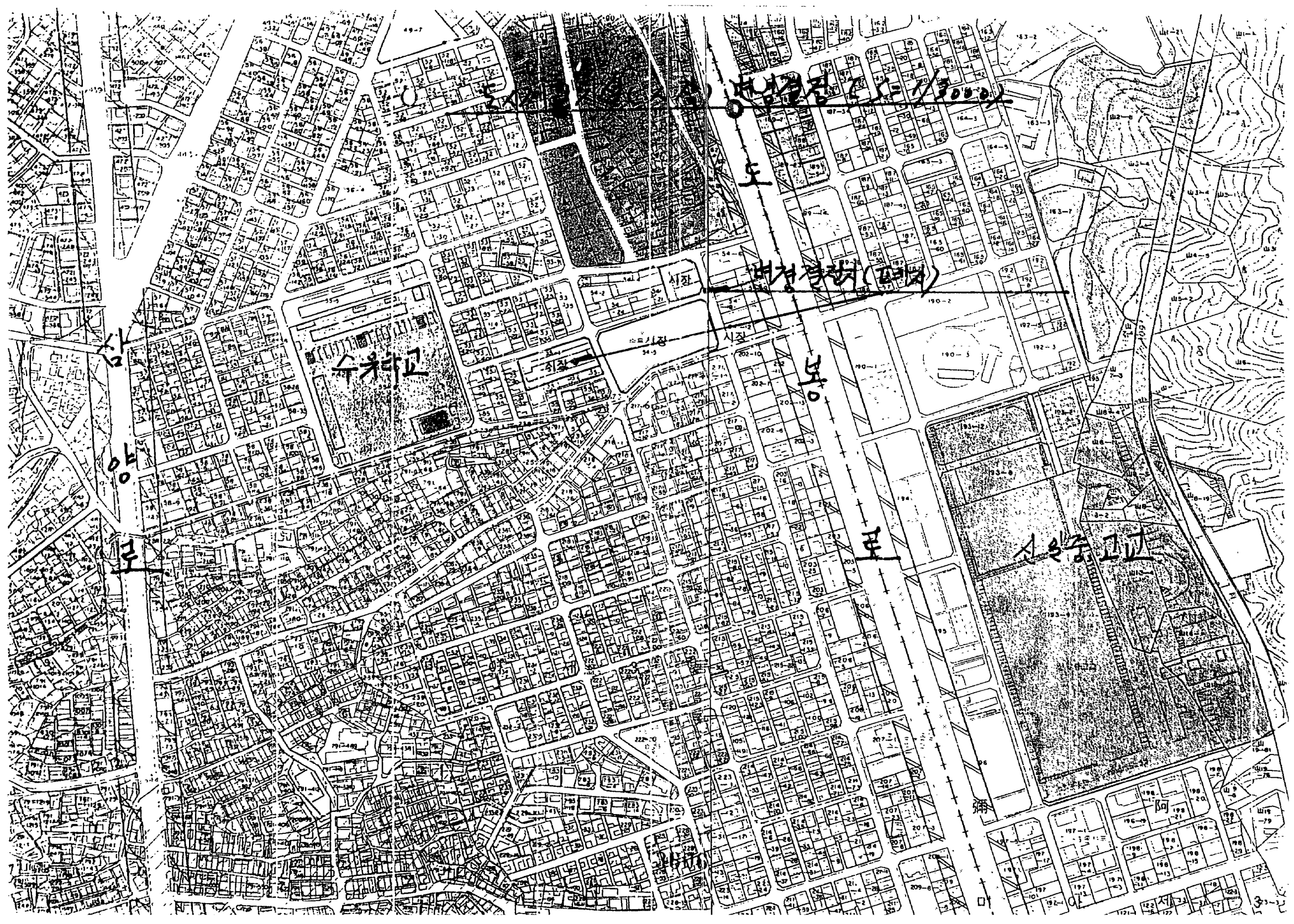
수신 : 총무청장관
제목 : 관보 게재 의뢰
1.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 의뢰 합니다.
가. 게재구분 : 고시.
나. 게재전명 : 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결정 고시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
라. 게재내용 : 별첨 고시문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(제5안) <span style="float: right;">도시계획법</span>
수신 : 도봉구청장 (도시정비과장)
제목 : 같음
1. 도정 30315-561호('87.3.6)관련임.
2. 귀호로 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결정 요청한 사항이 별첨과 같이 고시되었기
홍보마니, 관계도면정리및 관련과에 알리어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
첨부 : 고시문 사본및 도면 각1부. 끝.
(제6안)
수신 : 수신처 참조 916
제목 : 같음.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이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되었기 통보하오니
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및 도면 각1부. 표.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상공과장, 건축지도과장, 지적과장.



부

부

수목장

부

부

신영고